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10항 본문 중 “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3조·제28조·제31조·제35조”를 “제9조·제10조제2항·제13조·제31조·제35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55조의2를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제55조의2”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미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미만	10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2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6 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0 이상
2천세대 이상	25 이상

제2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27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⑦ (생략)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4조·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3조·제28조·제31조·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적용한다.	⑩ ----- ----- 제9조·제10조제2항·제13조·제31조·제35조 ----- ----- -----. ----- ----- ----- 제55조의2----- ----- ----- ----- -----.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② (생략)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	③ ----- -----

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5조(진입도로) ① ~ ② (생략)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미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2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6 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0 이상
2천세대 이상	25 이상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

----- 하며, 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진입도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단위: 미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미만	10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2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6 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0 이상
2천세대 이상	25 이상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③ (생략)

④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 ⑧ (생략)

제27조(주차장)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⑥ ~ ⑧ (현행과 같음)